

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[도일용 의원 대표발의]

의안 번호	124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9. 9. 6.

발의의원 : 도일용 의원, 김보경 의원

1. 제안이유

- 영유아의 급·간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성장기 영유아에게 보다 균형 잡힌 양질의 식단을 제공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영유아 급·간식의 질 향상을 위한 비용 신설
(안 제34조제1항제8호)

나. '군수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제1항제8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'는 조항 신설 (안 제34조제3항)

3. 개정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36조
 - 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 제24조

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8호를 제9호로 하여,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영유아의 안전, 위생, 영양 및 건강을 위한 비용
8. 영유아 급·간식의 질 향상을 위한 비용

제3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
- ③ 군수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제1항제8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4조(비용의 보조) ① (생략) 1 ~ 6 (생략) 7. 영유아의 안전·위생을 위한 비용 및 영 양 등 건강을 위한 비용 8. 그 밖에 군수가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 를 위한 보육 프로그램 개발 및 어린이 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② (생략)	제34조(비용의 보조) ① (현행과 같음) 1 ~ 6 (현행과 같음) 7. 영유아의 안전, 위생, 영양 및 건강을 위한 비용 8. 영유아 급·간식의 질 향상을 위한 비용 9. 그 밖에 군수가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 를 위한 보육 프로그램 개발 및 어린이 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② (현행과 같음) ③ 군수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제1항 제8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.

□ 영유아보육법

제36조(비용의 보조 등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, 보육교사(대체교사를 포함한다)의 인건비, 초과보육(超過保育)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,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,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,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.

□ 영유아보육법 시행령

제24조(비용의 보조)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.

1. 어린이집의 설치, 증축·개축 및 개수·보수 비용
2. 보육교사 인건비
3. 교재·교구비
4.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비
5.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
6.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

7.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

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.

발 의 자 서 명 부

의 원 명	서 명	날 인
도 일 용	조 일 용	
김 보 경	김 보 경	

